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33호 2020. 3. 23.(월)

규 칙

- 목포시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2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8

고 시

-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 12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3

공 고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21
- 목포시 가로수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3

회람							
----	--	--	--	--	--	--	--

목포시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88 호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목포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목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목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목포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표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6년 이내)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①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18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또는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25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 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20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 전반 행정처분 여부	5	
서비스제공계획의 총괄성 및 적절성 (15점)	사업계획, 운영규정 등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5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점)	15	
자원관리의 체계성(15점)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5점) - 시설 설치 부채비율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등기부등본, 차입금사 전신고서 제출여부 및 부채상환 계획 등)(5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 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5점)	15	
인력관리의 체계성(20점)	사업계획 및 인력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5점) - 요양인력의 4대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5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수립 여부 (ex. 공개모집 여부 등) (5점) - 직원 건강검진 및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건강관리 계획 마련 여부 및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5점)	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789 호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범위) 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해당연도 예산을 말한다.

②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예산액을 사용료 지원 신청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원 금액은 사용료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란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 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연 2회로 나누어 계약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동호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나 동호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지원을 제한한다.

제5조(지급대장의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단체·동호회 명 (회원 수)		(회원 수 : 명)	
사용 학교시설명 (주 소/전화번호)		(주소 : 전남 목포시 / 전화번호 :)	
사	○ 종 목 :	○ 활동인원 :	
용	○ 계약기간 :	○ 사용시간 :	
개	○ 사용주기 :	○ 사 용 료 :	
요	○ 납부일자 :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단체·동호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휴대폰)	SMS 수신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핸드폰 : 집전화 :
계좌번호(예금주)	()	은행명	
주 소			
지원신청금액(원)	금 원	금 원	정 원
첨 부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주소,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목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체육과장, 061-270-340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귀하께서 신청하시는 신청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u>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목포시(교육체육과장)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 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 인 정 보 수집·이용·제공 동 의 여 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목포시 고시 제2020 - 83 호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수행자 선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전남 목포시 하당로 288)
2. 사업지구 명칭 :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사 업 지구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위 치	필지 수	면 적 (㎡)
산정1지구 및 대반마을지구	목포시장	목포시 산정동 44-10 및 죽교동 405-57 일원	370	67,451

4. 수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 지적재조사 측량 : 측량계획도 작성, 기준점 측량, 일필지 측량 등
 - 경계조정 :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 및 면적조정,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 토지현황조사 : 토지현황조사서 및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등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061-270-8118, 36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고시 제 2020-8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7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의 폐지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텃골로33번길 58	2020.3.23.	건물 철거
2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26번길 1-1	2020.3.23.	건물 철거
3	전라남도 목포시 만세로 33	2020.3.23.	건물 철거

목포시 공고 제2020-453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대한축구협회에서 2020년 K3리그 출범에 따라 참가자격을 규정한 「KFA 3부, 4부리그 클럽라이센싱 규정」 중 제18조(클럽사무국) 및 제33조(클럽의 지배구조)에 의해 독립법인형태의 리그참여 및 클럽사무국 설치를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 이에 (재)목포국제축구센터의 기존조직과 시설을 활용하여 독립법인 및 사무국 설치의 추가비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 근거 명문화(안 제18조)
- 위탁운영 시 수탁관리자의 의무사항명기(안 제19조)
- 위탁운영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 근거마련(안 제20조)

3. 입법예고

○ 2020. 3. 23(월) ~ 2020. 4. 13(월)[21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3일까지 목포시장(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6),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061-270-8639, FAX 270-36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조례 제 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법인의 설립)” 을 “(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를 “위하여 위탁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따라” 를 “따라 위탁 또는” 으로, “위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에” 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을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으로,
“법인 운영보조금” 을 “출자 또는 보조금” 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법인의 의무)” 를 “(수탁관리자 및 법인의 의무)”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를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
관리자 및” 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장은” 을 “시장은 위탁 및” 으로, “있으며” 를 “있으며 수탁
관리자 및”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u>법인의 설립</u>)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u>위하여</u>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18조(<u>위탁 또는 법인의 설립운영</u>) ① ----- ----- <u>위하여 위탁 또는</u> <u>는</u> -----.
② 제1항에 <u>따라</u> 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u>위하여 법인설립 및 운영에</u>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 <u>따라 위탁 또는</u> ----- ----- ----- <u>위하여</u> ----- ----- ----- -----.
③ <u>시장은</u> 운영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u>법인 운영보조금</u>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③ <u>시장은 수탁관리자 및</u> ----- ----- <u>출자 또는 보조금</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u>법인의 의무</u>) 제18조에 의한 <u>직장운동경기부의</u> 운영 법인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u>수탁관리자 및 법인의 의무</u>) ----- <u>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 및</u> ----- ----- -----.

제2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법
인의 설립·운영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
영 법인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야 한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위
탁 및 -----
----- 있으며 수탁관
리자 및 -----.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공고 제2020-445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인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2020년 3월 29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일간 (공휴일에 불구하고)

나.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다.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동 주민센터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동주민센터 소재지	23개소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 목포시청 (<http://www.mokpo.go.kr>)

마. 인터넷 열람방법

- 1) 목포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및 이의신청) 선택
- 2)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가. 확인기간

2020년 4월 4일부터 ┐
2020년 4월 15일까지 ┘ 12일간 (확인시간 제한없음)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다.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 목포시청 (<http://www.mokpo.go.kr>)

라. 인터넷 확인방법

- 1) 목포시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선거인명부 인터넷 확인) 선택
- 2)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함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문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공고 제 2020-6호

「목포시 가로수·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목 포 시 장

1. **조례(규칙)명** :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 취지** : 정당한 사업자가 가로수의 식재 및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일부 개정
3. **주요 내용** :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조항 개정(제20조)
 - 1항에 추가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인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 2항에「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 6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목포시장(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061-270-3422, FAX 270-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및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목포시 가로수·도시림등의 조성및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중

- ①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를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 ②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 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를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의거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u>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u> ②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u>산림법시행규칙</u>」 제2조의3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u>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6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 ②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u>산림보호법</u>」 제21조의9에 따라 등록된 <u>나무병원</u>또는 「산림조합법」제108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